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92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강경숙·문진석·신장식
김준형·황운하·김재원
박은정·정춘생·김선민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정서·행동위기학생은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행동중재를 전담할 교원 등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가 없어 전문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실

행·평가를 담당하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기준·자격 등에”를 “기준·자격, 제6항에 따른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의 배치 기준 및 업무 범위,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방법 및 이수 기준, 제8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9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운영 등에”로 한다.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하 “정서·행동위기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실행·평가 등을 전담하는 교원(이하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어 순회근무의 형태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중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를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 ⑧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⑨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하 “정서·행동위기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실행·평가 등을 전담하는 교원(이하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어 순회근무의 형태로 지원하게 할 수 있다.</u> <u>⑦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중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를 이수한 사람으로</u>

<신 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다.

⑧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⑨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⑩ -----

기준·자격, 제6항에 따른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의 배치 기준 및 업무 범위,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방법 및 이수 기준, 제8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9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운영 등에-----
-----.